

#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제79호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5. 12.13.  
제출자 : 사천시장

## 1. 의결주문

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전자입찰제도의 도입으로 행정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입찰참가 신청 수수료를 폐지하여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.

## 3. 주요내용

- 입찰참가 신청 수수료 1건당 10,000원 삭제(안 별표1)

## 4. 주요 토의과제 : 없음

## 5. 참 고 사 항

가. 관계법령 : 따로 붙임

나. 예산조치 : 연간 3억원 정도 세입 감소 예상

다. 합 의 : 기획담당관실

라. 기 타

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따로 붙임

2) 입법예고(2005. 9. 2 ~ 9. 26)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

3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사천시 조례 제 호

##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의 〈인가, 허가, 신고, 신청, 등록, 지정확인 등〉의 제9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			개 정 안			
[별표1] 제증명등 수수료 (단위 : 원)				[별표1] 제증명등 수수료 (단위 : 원)			
구 분	기준	요액	비고	구 분	기준	요액	비고
<인가,허가,신고, 신청,등록,지정 확인 등>  1.~8. (생략)	(생략)	(생략)	< ----- ----- -----	< ----- ----- -----	(현행 과 같음)	(현행 과 같음)	(현행 과 같음)
9. 회계 관계 (1) 입찰참가 신청 (공사, 물품의 제조 구매 및 용역등의 경쟁입찰과 수의 계약. 다만, 수의계약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 에 규정한 1인으로 부터 견적과 견적서 미제출 수의계약은 제외)	1건	10,000	<삭 제>	<삭제 ≥	<삭제 ≥	<삭제 ≥	<삭제 ≥

# 관 계 법 령 발 취

## 지방자치법

第15條 (條例) 地方自治團體는 法令의 범위안에서 그 事務에 관하여 條例를 制定할 수 있다. 다만, 住民의 權利制限 또는 義務賦課에 관한 사항이나 罰則을 定할 때에는 法律의 委任이 있어야 한다.

第128條 (手數料) ①地方自治團體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事務가 特定人을 위한 것일 경우 그 事務에 대하여 手數料를 徵收할 수 있다.

②地方自治團體는 國家 또는 다른 地方自治團體의 委任事務가 特定人을 위한 것일 경우 그 事務에 대하여 手數料를 徵收할 수 있다.

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收入으로 한다. 다만, 法令에 달리 定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